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5
----------	-----

2021. 10. 22.(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0월 13일

-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거래 소방본부장)

가. 제안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 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 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를 하도록 2019년 5월 17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1조가 2020년 6월 9일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가 의무화 되어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입법예고('21. 8. 20. ~ '21. 9. 1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조례 폐지조례안」 등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845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소방시설공사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가 개정('20. 6. 9.) 및 시행('20. 9. 10.)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

5. 관계법령 발취 : 불임

6. 비용추계서 : 별도조치 필요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